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10. 3. 10.
개정 2012. 12. 10.
개정 2013. 7. 24.
개정 2013. 12.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96조 및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2장」에 따라 공과대학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및 학점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과대학 학생의 외국대학에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학) 지원대학은 서울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외국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자격) 공과대학 재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 수학 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지원자” 라 한다)은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2.7 (B⁻)이상, 대학원과정은 3.3(B⁺) 이상인 자로 한다.

제5조(수학신청) ① 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소속 학부장·학과장에게 제출한다.

1. 수학신청원 [별지 제1호 서식]
2. 지도교수 추천서

② 소속 학부(과)장은 수학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학장에게 수학을 신청한다.

③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에, 계절학기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수학허가) 수학허가는 공과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외국대학 수학추천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서식 신설 2012. 12. 10.)

제7조(등록 및 학기의 인정) ①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학생 교환협정으로 정한다. 다만, 상호 수강료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는 그 수학기간 동안 서울대학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② 학생교환협정에 따라 외국대학에서 한 등록 및 수학기간은 서울대학교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③ 휴학기간 중에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학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등록학기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교과목의 이수) 이수 교과목은 전공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학신청의 취소) ① 수학신청의 취소(계절수업 수학 취소 포함)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의 수학신청 취소원을 소속 학부·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의 취소 신청에 의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취득학점)**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학점, 대학원과정은 과정별로 12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12. 10.)
- ② 서울대학교와 외국 대학간 학생의 수학기간 동안의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학점을 포함하여 공과대학 소속 학부(과)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12. 10.)
 - ③ 외국어 관련 수강과목은 학기당 3학점 이내로 한다. (신설 2013. 7. 24.)

제11조(수학기간)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학사과정은 4개 학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내로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4개 학기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12조(학점의 인정 기준)** ① 공과대학장은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 다만, 이수한 성적의 등급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등급간 차등 인정을 학사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0, 2013. 12. 1.)
- ②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
 - ③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④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과 전공 관련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3조가 정하는 학점인정 심의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학점인정 절차) ① 수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성적증명서와 이수기록 등 관련서류를 지도교수와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공과대학장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 (개정 2012. 12. 10, 2013. 12.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수학이 허가된 자는 서울대학교특별생수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 12.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 제3항의 신설규정은 2013학년도 국외수학 승인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12.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